



## 구성원의 제안 및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제정일  | 2017. 6. 1 |
| 개정일  | 2023.10. 1 |
| 개정차수 | 3차         |
| 담당부서 | 기획예산과      |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.)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와 대학운영에 구성원의 제안 및 의견수렴 등(이하 ‘의견수렴’ 이라 한다)을 통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3조 (의견수렴) 구성원의 의견수렴 참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의 상시 제안 접수
2. 대학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(개정 2023.10. 1)
3. 부서별 수행 업무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

제 4조 (주관부서)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. 단, 제3조 3호의 주관부서는 각 해당부서로 한다.

제 5조 (의견수렴 절차) ① 교직원의 제안은 대학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. (개정 2023.10. 1)

② 상시 제안 사항은 접수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 검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, 그 처리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한다. (개정 2018. 7. 1, 2023.10. 1)

③ 교직원의 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, 제반 절차는 대학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절차에 따른다.

④ 각 행정부서별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의 의견수렴 및 처리는 업무별 규정 또는 지침 등에 따른다.

제 6조 (위원회) ① 상시 제안에 관한 사항은 각 행정부서별로 시행 여부 및 방안을 강구한다. (개정 2023.10. 1)

② 상시 제안의 시행 여부 및 방안에 대해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검토, 자문한다. (개정 2020. 1. 1, 2023.10. 1)

[본조개정 2018. 7. 1]

제 7조 (환류) ① (삭제 2023.10. 1)

② 기획예산과는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시행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매 학기말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 상정한다. (개정 2020. 1. 1, 2023.10. 1)

③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8조 (평가반영) 교직원의 제안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개인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 (삭제 2023.10. 1)